

자동차보험

제1장 자동차보험의 관련법률

제1절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306p. 1. 자동차사고의 3대 법적 책임 -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

구분	민법	자배법
주체	사용자/운전자	운행자: 운행지배권의 개념
입증책임	피해자	운행자(가해자)
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보장기능	X	정부보장사업

제2절 민법

308p. 2.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내용(조건)

1. 가해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가해자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4.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상당인과관계) 등이다.

Ex) 310p. 위에서 5째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심한 고민을 하다 자살한 경우에는 그 자살과 자동차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인정

311p. 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나. 적용사례 - 8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자동차사고를 내면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부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315p. 5. 도급인의 책임

원칙상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적용사례 학습

Ex) 세차를 맡긴 차량의 세차업무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16p. 6.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점유자의 1차적 과실과 소유자의 2차적 무과실책임

à겨울철 고속도로의 다리 위만 결빙되어 발생한 사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진다.

318p. 8. 공동불법행위자이 책임

나. 부진정연대책임

연대책무 à 손해배상의무를 지닌 자가 복수라면 이들은 각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

부진정 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적 효과를 지니지만 면제와 소멸시효에서는 상대적 효과를 지님

효과: 318p. 아래서 5째줄 사례: 1차량과 2차량이 6:4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차량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와 완성되었고 1차량과는 아직 남았다고 할 때 연대책무이므로 1차량에 100%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1차량은 100%의 손해배상을 하는 대신에 40%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2차량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19p. 다.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자기부담 부분의 초과 부분만 구상이 가능하다.

6:4 과실을 가진 공동불법행위자 1,2의 경우에 1이 2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1천만원으로 가정 할 경우 6백만원 이상을 배상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거꾸로 2가 1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400만원 이상을 배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320p. (2)호의동승 감액과 공동불법행위 사고

호의동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이 감액되지만 공동불법행위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공동불법행위사고에서는 호의동승 감액주장은 의미가 없다.

321p. (3)구상채무는 분할채무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아무에게나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불가하며 분할채무가 형성된다.

즉, 1,2,3 3인의 불법행위자가 2:3:5의 과실비율로 1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2가 먼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 경우 1또는 3에게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백만원을 청구할 수 없고 1에게는 2백만원까지, 3에게는 5백만원까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2p.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323p. (3)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사례

통상손해(직접손해) / 특별손해(간접손해: 위자료,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증가된 치료비 등)

323p. 나. 손해의 분류 - 적극적 손해(현재 발생한 손해) / 소극적 손해(미래 발생할 손해)

326p. 10. 소멸시효(중요)

나. 소멸시효기간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2.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권, 일반채권, 소송판결채권: 10년
3.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대위권: 10년
4. 자동차사해, 무보험자동차사해 및 자기차량의손해의 대위권: 3년
5. 상사채권: 5년
6. 지배법상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정부보장사업청구권. 음주무면허 운자부담금 구상권: 3년
7.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2년
8. 보험료청구권: 1년

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1)~(15)까지

(11)식물인간이 예상 여명 후에도 생존할 경우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

(12)2세 유아가 성장판 손상을 알 수 없는 경우

의사진찰을 받고 후유장해가 있음을 안 시점을 기준

330p. 라. 시효의 중단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되 온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 시작됨

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Ex) 사고가 발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1개월 전에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동안 경과한 2년 11개월은 무효가 되고 청구한 날로부터 다시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과 새로이 진행

333p. 마. 시효의 정지

중단은 중단사유 발생 후 시효가 새롭게 시작되지만 정지는 정지기간만을 제외한다
사유로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예: 이혼 이후 6개월은 시효가 정지됨),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335p. 11. 손해배상청구권자

가.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자

1. 부상자본인의 위자료: 본인(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며 권만 대리인이 행사)
2. 가족의 위자료: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등
3.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등: 부상자 본인

335p. 다. 재산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성이복형제 자매는 제외)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4촌이내에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
*배우자는 직계 비존속과 공동상속 / 동순위가 다수일 경우 근친이 우선
Ex) 아들과 손자는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있는 경우 손자는 상속권이 없다.

337p. 사.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정지조건설(판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태아가 태어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인정
해제조건설(학설): 출생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나 태아가 사산된 경우 소급하여 상실된다.

340p. 유류분 처리 사례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함

340p. 혼동과 상속포기

혼동: 가해자(배상책임 당사자)와 상속인이 동일한 경우 동일인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
지게 되어 채무의 범위 내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

Ex) 아버지가 운행하던 차에 동승한 아들이 아버지의 운전 과실로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피해자인 아들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배상책임액의 상속인이 되어 손해배상청
구권이 상실된다. 다만, 이때 어머니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권은 1:1로 가지게 되고 아버
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어머니는 온전하게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사례 학습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47p. 나.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도입

(2)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운행자 면책요건

→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

(3)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운행자 3면책요건

1.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2.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3.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없을 것 등이다.

위 3면책요건을 운행자가 입증해야 운행자는 면책된다.

349p. 라. 의무보험제도

의무보험차종: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 / 6종건설기계 등

제외차종: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UN군 자동차 / 미군자동차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 피견인자동차

350p. 마. 직접청구권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대인배상1에 적용(대인2와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인배상1 직접청구권은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된다

355p.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정부보증사업보상청구권 등은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357p. 3.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운행지배권이 중요개념

Ex)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 → 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차를 회수할 수 있다. 즉, 운행지배권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 무단절취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운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량관리를 철저히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문을 시건하고 주차장(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강제로 문을 열고 가져간 경우는 운행지배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건장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차 키를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민법상 관리소홀 책임을 사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특별법인 자배법에 민법의 법리를 확대해석한 경우이나 민법과 자배법 모두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공통된 취지에서 제정된 부분을 들어 인정되는 케이스)

Ex) 렌터카 회사는 운행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

단순 명의 대여는 운행지배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나 자동차 명의만이 아닌 사업명의 등까지 대여한 경우에는 운행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

361p. 4. 자배법상 타인

타인: 운전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

Ex)운행자: 차주 / 운전자: 운전기사 / 운전보조자: 차량 안내원 등

타인에 해당하면 대인배상1에서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다 à 동승자도 보상이 되는 이유

364p. 다. 운행을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Ex) 추운 겨울에 차에서 잠을 자려고 시동을 걸어둔 경우 / 물건을 싣는 중 발생한 사고 등

제 4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 및 사례 학습

제2장 자동차보험 약관

의무보험: 대인배상1(사망 및 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대물배상(1천만원)

무보험차상해: 가해차량의 대인배상2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장받음. 대인1도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1만큼은 보장

자상 혹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중복보상 되지 않으며 먼저 받은 금액은 상호공제

376p. 3. 보험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단, 의무보험의 경우 전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

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의 24시까지

제2절 담보종목별 보상책임

377p. 1.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및 대물배상의 보상책임

가. 보상책임 발생요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사고. 대인배상1에서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어야 한다고 규정. 대법원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사고와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동일하게 해석.

379p. 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대인배상1은 자배법, 대인배상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380p. 3.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책임

가. 보상책임 발생요건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이어야 함
2.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함
3.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함

나.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 (1) 무보험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피보험자동차와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 (2) 무보험자동차로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 (3) 무보험자동차에서 '무보험'으로 되는 자동차

382p. 4.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책임

가. 열거책임주의 중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일부 부속품 등의 도난은 보상하지 아니함)

386p. 라. 허락피보험자

2. 차주A, 친구B, B의 지인 C 에서 A가 B에게 허락 하에 차를 빌려주었는데 B가 A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C에게 차를 빌려주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명 피보험자 A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상1,2를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C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C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89p. 오타정정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의 범위 1.대인배상2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서 피보험자 à 면책사유로 정정

390p. 3.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가.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4. 자기차량 손해의 피보험자 à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

제4절 면책사유

391p. 1. 대인배상1의 면책사유

à 고의만 면책사항임

406p. 마. 골동품, 미술품, 휴대품 등의 손해

à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 휴대품(유가증권, 현금, 지갑, 만년필 등)
가치산정이 곤란하고 도덕적위험이 크기 때문

407p.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제5절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418p. 1.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및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 계산

가. 산식 [대인배상1 지급보험 = 지급기준액(또는 확정판결금액) + 비용 - 공제액
다. 비용

(1) 대인1,2 및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비용의 종류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비용

419p. 라. 공제액

대인배상1: 공제액 없음

대인배상2: 대인배상1로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액을 공제

대물배상: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

*사례학습하기

420p. 2.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

나.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산정방법

(1) 산식: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β '실제손해액' 대인배상과 구분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22p. 오타정정

(2) 사례2 <풀이>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5,400만원(=4,000'x90%) 에서 '4,000' à '6,000'

423p. 3.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

산식: (지급보험금)=(지급기준액) + (비용) - (공제금액)

제6절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와 양도

435p. 아래서 3째 줄

(3)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à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¹, 및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437p. 2.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나.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차종의 범위

1.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2. 업무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3. 영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3종 화물자동차 간에 대체한 경우를 말함

제7절 대위와 보험금 분담

439p. 나. 독립책임액 분담방법에 의한 보험금의 분담

손해액 X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441p. 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대위권의 포기

(1)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

제8절 자동차보험의 계약 일반사항

442p.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인^{1,2},대물: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명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à 2년 / 자기차량손해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로부터 2년

제3장 보험금지급기준

제1절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

446p. 1. 사망보험금

가. 사망보험금의 구성 à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나. 장례비: 300만원

다. 위자료: 사망자연령이 20~60세 미만: 4,500만원

사망자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원

유족위자료 배우자: 500만 / 부모 300만 / 자녀 200만 / 형제자매 100만 / 시부모 및 장인장모 100만

라. 상실수익액 = (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취업가능월수에 해당되는 L계수
= (현실소득액 X 2/3 X 취업가능월수에 해당되는 L계수

448p. (5)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한을 만 60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60세가 되는 날이며 만 60세가 끝나는 날이 아님에 주의

2. 별도의 정년이 있으면 그에 따름. 교수 65세, 농어업인의 가동연한은 65세 3~8까지 학습

450p. 2. 부상보험금

가. 부상보험금의 구성 -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451p. 3.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으로 구성

나. 후유장애 위자료

(1)노동능력 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사망 총위자료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의 70%
후유장애 위자료 = 사망위자료 총액 X 장해율 X 70%

(2)노동능력 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50%미만~45% 이상이면 400만원을 인정 / 5% 미만이면 50만원을 산정하여
8등급을 나눔

455p.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인정대상 자동차 - 출고 후 2년 이하

다. 시세하락손해 인정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제3절 과실상계

456p. 1. 과실상계 - 형평성에 근거

2. 손익상계 - 이득금지의 원칙

나.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금액

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생명보험금, 상해보험금, 사회부조나 은혜적 급부 등
손해전보성 금액이 아닌 것)